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– 810호

-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-
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 공고

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 규정 및 2026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31.

인천광역시장

<표>

<표>

1. 지원구분 및 개요

<표>

※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: 기부업체 I (지원한도 : 최대 5억원 이내), 기부업체 II (지원한도 : 최대 10억원 이내)

2. 금회 지원내용(26년 상반기 이차보전 지원 추가접수)

- 지원규모 : 3,700억원(은행협조용자)
- 지원한도 : 기업당 최저 2억원 ~ 최대 100억원(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)
- 지원내용 :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
 - ※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,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기업이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
 - ※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: 기업 정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
- 대출금리 : 시중 자율금리
- 대출기간 : 1년, 2년(만기일시상환), 3년(6개월거치 30개월(5회) 분할상환)
[단, 함인사: 4년(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), 수출기업: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]
- 대출실행 기한 : 2개월 이내(1개월 연장 가능)
- 협약은행 : 총15개 은행
신한은행, 기업은행,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KEB하나은행, NH농협은행, 수협은행, 부산은행, JB전북은행, 산업은행, 광주은행, iM뱅크(대구은행), 경남은행, 수출입은행, 새마을금고

3. 지원이자율

<표>

4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4. 3.(금) 14시 ~ 재원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비즈오케이 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- 문의 :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☎(032)260-0661~4

5. 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
○ 지원한도 산정

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,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
- 창업1년 미만(또는 결산기간 미도래)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
-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
-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

<표>

6. 지원절차

<표>

7. 지원제외 대상

<표>

8. 지원결정 취소 등

- 지원결정 후 폐업, 관외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
-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9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,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* 보증서,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인천신용보증재단 등) 별도 문의
-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
- 용자지원기간 중 휴·폐업하는 경우, 사업장(공장)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, 회수 등의 조치를 있음
-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(단,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)
-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,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
-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지원사업(정기공고)과 별도 시행 중인 '금융기관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(연내 시행 예정 포함)' 통합 적용(합산관리)되므로,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, 선접수 1건만 유효한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
-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(신청기업 대표자)에게 귀속하며, 구비서류 누락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, 신청자(기업) 대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음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및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

<표>

지원대상 :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
 제조업 : 제조업(관내 공장등록 必), 제조업전업률 30% 이상

<표>

제조업관련업 :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

<표>

※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은 별첨 참고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저 2억원 ~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최대 10억원 중 작은금액 (단, 2억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)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지원이자율

-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: 최저 0.5% ~ 최대 2.0%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<표>

여성기업, 여성친화기업, 장애인기업,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 유의사항

- 우대 서류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인정됨

<표>

유망중소기업, 비전기업, 중견성장사다리기업,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,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,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, 아름다운공장선정기업,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, 인재육성형 중소기업,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, 지역상품 구매기업, 연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10억원 ~ 50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※ 지역상품 구매기업 및 인천미래혁신기업은 기본지원이자율 2% 고정 지원 (우대지원율은 해당 없음)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* 지역상품 구매기업 :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(제조원가명세서)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 ('26. ~) 지역상품 10% 이상 매입한 기업

기타 유의사항

- 유망중소기업, 비전기업, 중견성장사다리기업, 중소기업인 대상기업,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은 인증서 신청일 기
내 우대지원
-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,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,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, 가족친화기업,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재기
수상기업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
- 인천미래혁신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

<표>

벤처기업, 스마트공장도입기업, 지식기반서비스업, 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,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10억원 ~ 15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 유의사항

-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는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(중소벤처기업부)

<표>

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기업,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, 산업포장, 산업훈장 수상기업, 국가R&D(연간 5억원/건 이상)
선정기업, 예비유니콘, 아기유니콘, 퍼스트펍 선정기업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업체당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
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 유의사항

-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기업은 인증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우대지원
-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, 산업포장, 산업훈장 수상기업, 국가R&D(연간 5억원/건 이상) 선정기업, 예비(아기)유니콘, 퍼스트펍권 선정기업은 신청일 기준 수상(선정)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

<표>

FTA인증 수출기업,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, 수출기업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10억원~30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※ 단, 수출기업은 우대보전율 0.2%와 별도로 개별은행에서 추가우대 있을 수 있음 (ex)수출입은행 0.3%p 우대)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- FTA인증 수출기업,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

<표>

○ 수출기업(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일)

<표>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사항

-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, 택1
- 수출실적은 최근 1년간의 직 간접 수출실적 증빙
- 수출계약은 최근 심사시점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 증빙
- 수출계약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매입환율(받을 때) 적용
- 수출기업의 대출기간은 6개월 또는 1년(원금일시상환)으로 한정

<표>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30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사항

-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 합산 가능
 - 1)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
 - 2) 법인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
 - 3) 포괄양수도계약서

<표>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10~55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※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기본지원이자율 2% 고정 지원 (우대지원율은 해당 없음)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- 고용창출기업 I 과 II 는 개업일자가 2023. 01. 02 이전이면서
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
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
-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: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, 100명 이상시 50억원
- 단,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사항

- 고용인원 산출방법
 - 1안)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(귀속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
 - 2안) 평균인원 계산
 - 월별 신고기업 : 귀속연월 1월~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
 - 반기별 신고기업 : 귀속연월 1월분(상반기), 7월분(하반기)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
- ※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
- ※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,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
-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, 인천지역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인원 합산
-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빙서류 확인 및 고용인원 합산

<표>

해외유턴기업, 우리시 전입기업, 신규산단 입주기업, 산단 지식산업
센터 입주기업, 6대 전략육성산업, 재해기업

지원대상 : 일반기업과 동일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10억원~100억원과 매출액의 1/3 중 작은금액

<표>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지원가능한도 산정
 - 최근결산 매출액의 1/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
 - 기존 대출금액 차감

<표>

<표>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사항

- 재해기업은 구조고도화자금 심사기준을 준용하며, 매출액의 1/3 한도 규정에서 제외

<표>

함께하는 인천사람들,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, 창조경제혁신기업, 관광업

지원대상 : 업종무관

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0.3~5억원 이내

<표>

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이력,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
- 매출액구분 없이 항목별 최대한도로 추천

<표>

※ 지원업종 무관(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적용 예외), 재무제표상의 매출 무관

※ 정부자금 중복지원 제한 제외

지원이자율

<표>

구비서류

<표>

기타 문의처

- (사)함께하는인천사람들 ☎(032)873-3800
-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☎(032)458-5061
- 인천시 여성복지관 ☎(032)440-6516

【별첨자료】 「일반기업 - 제조업 관련업 관련(7페이지)」
<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범위>

<표>

※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

<표>